

연구보고서

2024

10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

: 누수 사고 관련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백영화·박정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목 차

• 요약	1
I. 서론	2
II.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관련 법리	6
1. 손해방지의무	6
2. 손해방지비용	11
III.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관련 분쟁사례	17
1. 일반 분쟁사례	17
2. 누수 사고 관련 분쟁사례	23
3. 소결	50
IV. 검토 및 제언	52
1. 합리적 해석 방안	52
2. 입법적 개선 방안	59
3. 맺음말	64
• 참고문헌	65

표 차례

〈표 I-1〉 경과년수별 건축물 비율 현황(동 수 기준)	2
〈표 II-1〉 보험사고 및 손해 관련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8
〈표 II-2〉 표준약관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관련 조항	13
〈표 III-1〉 거실 배관 교체 공사 견적서 항목	39
〈표 III-2〉 공사 항목별 지급 대상 여부	43
〈표 III-3〉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관련 일반 분쟁사례	50
〈표 III-4〉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경향	51
〈표 IV-1〉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대한 개정안	63

그림 차례

〈그림 I-1〉 누수 사고 지급 건수 추이	3
〈그림 I-2〉 누수 사고 지급 금액 추이	4
〈그림 III-1〉 누수 사고 관련 비용	25
〈그림 III-2〉 피보험자 자택 수리비 관련 쟁점	27
〈그림 III-3〉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비 중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31
〈그림 III-4〉 누수 사고 관련 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46
〈그림 IV-1〉 누수 원인 제거 공사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59

Study on the Loss Mitigation Cos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insured shall endeavor to avert or mitigate insured loss when the insurance accident occurs, and the insurance company shall bear the costs that were necessary or beneficial for the performance of the foregoing obligation (the “Loss mitigation costs”).

In a leak accident, a number of disputes arise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consumers as to whether the construction costs (e.g., pipe replacement costs, waterproof layer construction costs) performed on the insured’s house to eliminate the cause of leak are considered as loss mitigation costs under the liability insurance. In certain court precedents, the costs of directly eliminating the cause of leak were recognized as loss mitigation costs, considering that not only costs of temporarily preventing leakage but also costs of finding and removing the underlying cause of leak fall under the scope of loss mitigation costs.

However, it would not be reasonable to operate the scope of loss mitigation costs excessively wide. Since loss mitigation costs are a concept that the insured’s loss mitigation obligation should be premised, the scope of loss mitigation costs in a leak accident should basically be in accordance with the scope of the insured’s loss mitigation obligation in a leak accident, which would be reasonable to be interpreted in a limited manner by applying ‘urgency’ and ‘direct relevance’ requirement. In addition, if the construction costs of the insured’s house in a leak accident are broadly recognized as loss mitigation costs under the liability insurance, the liability insurance may actually be transformed into a property insurance that covers the insured’s house, which may be unreasonable.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유익하였던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히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 실시한 공사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수의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나 일부 판례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누수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 등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도 기본적으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에 따라야 하며 이는 ‘긴급성’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 반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누수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의 공사비를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수 있다. 이에,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분쟁 소지 등을 줄이기 위해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해놓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I

서론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배관(냉·온수 배관, 난방 배관 등)의 파손, 화장실 방수층의 손상, 외벽 콘크리트의 균열, 옥상 방수층 하자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에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나 균열 등으로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¹⁾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의 42.6%(동 수 기준, 주거용 건축물로만 보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누수 사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표 I-1〉 경과년수별 건축물 비율 현황(동 수 기준)

(단위: %)

구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 및 사회용	기타	합계
10년 미만	12.0	21.4	24.3	15.3	24.5	15.9
10년~20년 미만	11.9	20.5	29.9	26.1	23.3	16.1
20년~30년 미만	15.6	21.5	24.3	26.7	24.9	18.5
30년 이상	52.0	32.6	19.0	24.6	22.7	42.6
기타	8.4	3.9	2.5	7.4	4.5	6.8

자료: 국토교통부(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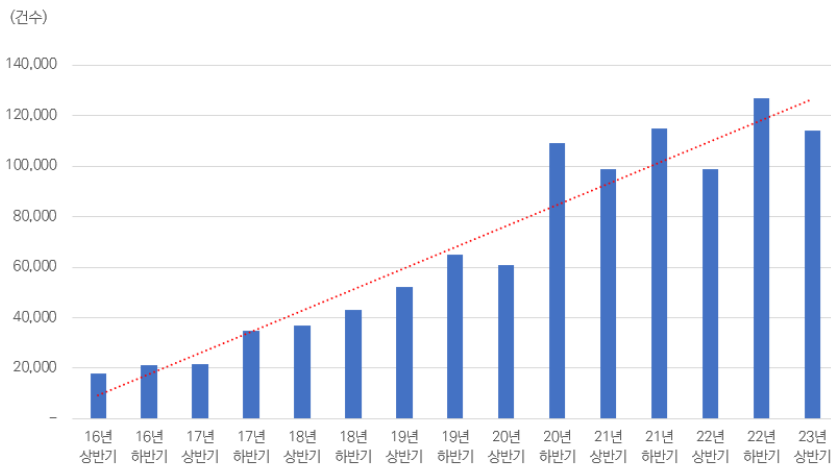
누수가 발생하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예를 들어, 아파트나 공동주택, 건물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로 최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현황에 의하면 누수로 인한 사고 비중 및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신용정보원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지급보험금 추이를 AI 툴을 활용하여 분

1) 한국경제(2020. 10. 26),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석한 결과에 의하면²⁾ 2016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지급 건수 중 누수로 인한 사고가 48.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³⁾ 특히 2016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사고 원인 중 누수 사고의 비중이 사고 건수 기준 29.1%에서 52.7%, 지급금액 기준 31.9%에서 65.6%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이 전체 사고 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금액이 11.1배(136억 원 → 1,517억 원), 지급 건수 7.1배(15,979건 → 113,217건), 평균 지급 금액 1.6배(855,952원 → 1,340,022원)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지급 금액 및 건수의 증가세(지급 금액 4.3배, 지급 건수 3.9배, 평균 지급 금액 1.1배)를 크게 상회한 수치로,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되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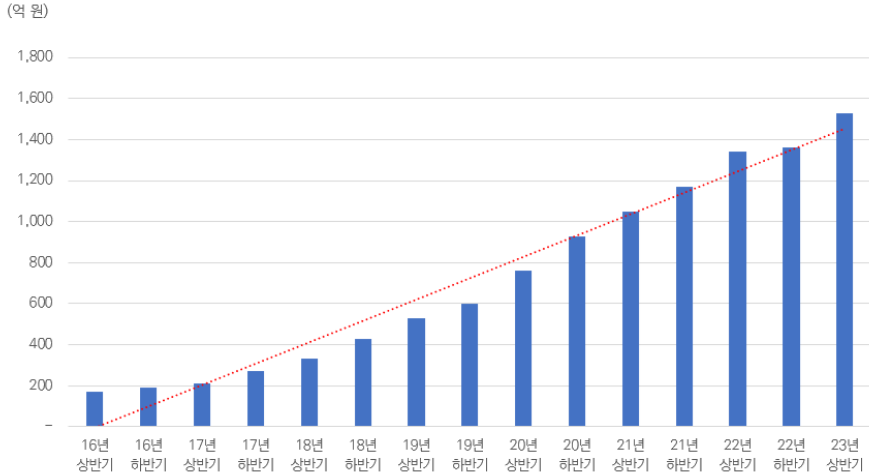
〈그림 I-1〉 누수 사고 지급 건수 추이



자료: 신정환(2023)

- 2) 보험금 지급 정보 중 ‘보험사고내용’ 항목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사고 원인 10종으로 분류하고, 머신러닝 분류모델을 통해 학습함
- 3) 누수(48.2%) → 기타(23.2%) → 놀이(10.6%) → 자전거(5.1%) → 떨어트림(5.0%) → 부딪침(3.8%) → 이종주차(2.3%) → 물체 던짐(1.0%) → 운동(0.5%) → 반려동물(0.3%) 순임
- 4) 신정환(2023)

〈그림 I-2〉 누수 사고 지급 금액 추이



자료: 신정환(2023)

누수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상법 및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의하면 주된 급부(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외에 손해방지비용(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등도 별도로 보상하고 있는 것인데, 누수 관련 보험금이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한 것에는 손해방지비용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보험자의 주택이나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주택이나 건물에 실시한 방수 공사비용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툼이 많은 것이다.⁵⁾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하면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항목으로, 보험회사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범위를 둘러싼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5) 머니투데이(2020. 4. 18), “화장실 누수된 김에 ‘울수리’... 보험금 받을까”; 보험신보(2020. 3. 16), “보험사기 격정되는 일상생활배책”; 대한금융신문(2023. 2. 22), “아랫집 누수 막는 ‘내 집 수리’도 보험금 받을까”

로 하여 상법상 손해방지비용 조항에 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법리 및 분쟁사례 연구를 통해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합리적 보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의 예방과 감축,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입법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2장에서 일반론으로서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조항의 내용, 취지 및 구체적 요건 등 법리를 살펴본다. 이어 3장에서는 주요 분쟁사례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의 일반론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누수 사고 관련 분쟁사례들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분쟁사례들을 토대로 하여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 방안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II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관련 법리

본 장에서는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관련 조항의 내용, 취지 및 구체적 요건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손해방지의무

가. 의의 및 취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의무⁶⁾를 지우고 있다.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이 정한 특별한 의무라고 보는 것이 학계에서의 통설⁷⁾이다.

상법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익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계약의 본질에서 그 인정 근거를 찾기도 한다.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만약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마땅히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어차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의

6) 정확히는 ‘손해방지·경감의무’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손해방지의무’라고 칭하며 본고에서도 이에 따르도록 함

7) 김성태(2002); 박세민(2021); 양승규(1994); 한기정(2018)

발생·확대를 방지한다면, 이는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것이다.⁸⁾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노력하였더라면 손해를 막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들이 방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확대되는 경우, 이로 인한 보험금 지출은 결과적으로 보험단체 구성원 전체의 피해로 돌아가고 그러한 방관적 태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확대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하는 공익 차원의 정책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⁹⁾

나아가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에서 이를 담보하지 않는 것인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확대된다면 이러한 손해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¹⁰⁾

나. 구체적 내용

1) 의무의 주체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서 손해의 방지·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¹¹⁾ 다만, 의무자가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다른 관계자가 대신 이행한 경우라면 의무자에게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본다.¹²⁾

2) 의무의 요건 및 시기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의무로서,

8) 박세민(2021); 한기정(2018)

9) 김성태(2002); 한기정(2018)

10) 정덕조(2020)

11) 손주찬·정동윤(2003)

12) 박세민(2021); 한기정(2018)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사고 발생 위험의 방지와 경감’ 또는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법상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이 존재할 때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의무는 아니다. 참고로, 보험사고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상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방지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며,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와 보험계약 해지(상법 제652조),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와 보험계약 해지(상법 제653조),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면책(상법 제659조) 등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표 II-1〉 보험사고 및 손해 관련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구분	내용
보험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의무가 의무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법 제680조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³⁾

그에 따라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안 때에 개시된다고 본다. 또한 손해방지의무의 종료 시기는 손해의 방지·경감 가능성이 사라진 때라고 본다.¹⁴⁾

한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법상 손해방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III의 1장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의무의 정도 및 범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①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②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③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어떤 내용과 어느 정도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보험사고의 종류, 손해 발생의 정도, 보험사고 발생 시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기울이는 것과 같은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¹⁵⁾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행위에는 손해를 직접적으로 방지·경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13) 박세민(2021); 손주찬·정동윤(2003); 한기정(2018)

14) 한기정(2018)

15) 박세민(2021); 손주찬·정동윤(2003); 한기정(2018)

간접적으로 방지·경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손해의 범위와 관련해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침해의 결과로써 생기는 손해(예를 들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를 의미하는 것인지, 보험회사가 보상 후 취득하게 되는 이익(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구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인한 손해까지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신의성실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가지는 청구권을 확보하고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등도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설도 있으나,¹⁶⁾ 판례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침해의 결과로써 생기는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III의 1장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한편, 상법에서는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손해가 방지되거나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손해방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학계 및 판례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경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나누어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회사는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액(즉, 손해방지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방지·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한편 ②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학계에서의 다수설이다.¹⁷⁾ 보험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경과실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게까지 불이익을

16) 양승규(1994); 한기정(2018)

17) 김성태(2002); 박세민(2021); 손주찬·정동윤(2003); 양승규(1994); 한기정(2018)

주는 것은 과중하다고 보는 것이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입장으로, 해당 판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III의 1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험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익의 보호 취지상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소수설도 있다.¹⁸⁾ 그러나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당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면책시키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만큼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의무 위반과 상관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판례 및 다수설에 찬성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2. 손해방지비용

가. 의의 및 취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보험사고에서 생긴 손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상법은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공익적

18) 최기원(2002)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⁹⁾ 공익적 측면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다.

나. 구체적 내용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행한 조치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한다.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용 지출 당시의 구체적 사정(보험의 목적, 사고 발생 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방지비용 역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즉,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보험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손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또는 유익했던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면책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고 또는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²⁰⁾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대로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긴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그 경우 해당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노력을 한 이상 그 결과 실제로 손해의 방지·경감의 효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법상 손해방지의무는 이행된 것으

19) 박세민(2021); 손주찬·정동윤(2003); 양승규(1994); 한기정(2018)

20) 박세민(2021)

로 보기 때문에, 해당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이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²¹⁾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고 정한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본다.

참고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의하면,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의 표준약관에서 손해방지의무와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방지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²²⁾

〈표 II-2〉 표준약관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관련 조항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신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하략)

21)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의 규정에 대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임)

22) 다만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하략)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중략)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 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하략)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책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 II-2〉 계속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표준약관

제4조(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III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관련 분쟁사례

본 장에서는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주요 분쟁사례들을 소개한다.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1항에서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의 일반론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2항에서 누수 사고 관련 분쟁사례들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도록 한다.

1. 일반 분쟁사례

가.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관련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와 손해방지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의 손해의 방지 및 경감에 관한 개념이다.

즉,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손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고, 손해방지비용은 그러한 행위에 필요하거나 또는 유익했던 비용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도 그때부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생겨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주로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분쟁사례들인데, 이에 있어서 법원은 “보험사고 발생 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1)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

가) 콘크리트 하자 보수 공사비용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인 원고가 레미콘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원고가 공사 현장에 공급한 레미콘에 콘크리트 경화 불량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원고는 콘크리트 경화 불량 하자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사고 해당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험회사가 회답을 하지 않자 독자적으로 전문기관에 하자 원인의 분석을 의뢰하였다. 위 콘크리트 경화 불량으로 인해 공사 현장에서는 다음 예정된 공정이 진행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고, 콘크리트 하자 부분이 지하 벽면을 구성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건물 붕괴 등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는 일반 시멘트보다 훨씬 고가의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고 야간작업도 병행 실시하여 콘크리트 대체·시공 등 보수 공사를 신속히 완료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법원은 원고가 신속한 보수 공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한 보수 공사비 부분²³⁾에 대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콘크리트 하자의 원인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콘크리트 하자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붕괴 등 안전상으로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서 시급하게 하자 보수 공사를 시행한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때'로서 그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방지의무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위 콘크리트 하자 때문에 건물의 기성 부분이 붕괴되는 등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서 시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시멘트가 아닌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고 야간작업도 병행하여 최대한 빨리 보수 공사를 완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23) 원고는 보수 공사비용으로 7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만약 공기 단축을 고려하지 않고 초속경 시멘트가 아닌 일반 시멘트를 사용하여 보통의 콘크리트 작업과 같은 인원과 속도로 작업을 했을 경우 원고가 지급해야 할 보수 공사 대금은 32,733,600원 정도였음. 해당 32,733,600원 부분은 하자 있는 레미콘 자체의 회수·대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며, 나머지 40,266,400원 부분에 대해 하자 있는 레미콘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기성 부분이 붕괴됨으로써 시공사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라고 본 것임

나) 부상자 응급 후송 및 치료비

낚시터를 경영하는 원고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낚시터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원고로부터 낚시터 주변 도로의 평지 작업과 준설토의 정리 작업을 위탁 받은 소외인이 굴삭기로 해당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굴삭기가 물속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이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원고에게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지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²⁴⁾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원고가 소외인의 응급 후송 및 치료비로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에 대해 법원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다.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으로 본 것이다.

다)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원고가 자동차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비 채무의 연대보증을 한 사안이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및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이에 대해 법원은,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비해서 한 최소한의 손해방지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면책 통보 시까지 발생한 치료비로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부분은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4) 실제로 이후에 소외인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공작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에서 결국 해당 사고는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확정되었음

2)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 손해방지의무의 개시를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법원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매우 넓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상태'라 함은 피보험자 측의 지배 영역을 벗어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 20998 판결).²⁵⁾

위 판례는 변호사인 원고가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원고는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등기업무의 처리를 위임받고 등기 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고용한 사무장이 등기 비용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등기업무의 처리가 지연되었고 이에 입주민들로부터 업무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민원을 받고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등기 비용을 마련하여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마친 사안이다.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원고가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면서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므로, 사무장이 등기 비용을 임의소비한 것 자체가 보험사고라고 할 수 없고 위임받은 등기사무의 불이행 등으로 원고가 위임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해당 사안에서는 원고가 등기 비용을 자기 비용으로 조달하여 위임사무의 이행을 마쳤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한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등기 비용이 부족해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등기의무 불이행에 따른 아파트 입주민들의 손해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고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상태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등기사무 처리에 지출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안의 경우 사무장의 등기 비용 횡령은 등기사무의 확정적인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상 아직 원고 측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금전은 대체 가능한 성질의 것이어서 원고가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무장으로부터 횡령금을 반환받아 등기사무의 이행을 마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등기사무가 지체되어 다른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

25) 해당 사건의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7나8380 판결에서 이를 설시하고 있음

나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사무장의 횡령으로 인해 등기 비용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손해의 범위 관련

상법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여기서 손해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① 피보험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로 생기는 손해(예를 들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를 방지·경감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②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하는 것도 방지·경감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는데, 법원은 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의 손해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의 결과로써 생기는 손해’만을 뜻하는 것이고, 보험회사의 대위권 또는 구상권과 같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게 부담되는 손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조항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그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보험계약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최대한의 원칙이 특별히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명문 규정 없이 그 손해의 범위에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손해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구상권을 확보하고 대위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1999. 2. 2 선고 98나36360 판결).

위 사안들은 원고가 주채무자(건설사)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채무자가 공사 등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채무자가 부도 등으로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못한 사안이었다. 이 경우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채권과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손해

방지의무 위반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손해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손해방지의무에서의 손해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가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주채무자의 공사대금과 상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증가하거나 소멸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주채무자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증가하거나 소멸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다. 손해방지의무 위반 시 효과 관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②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해당 사안은 원보험회사인 원고가 원보험계약자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원보험계약자의 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원고는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원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최종적으로 중재 절차에서 원고의 원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재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면책조항 주장뿐만 아니라 원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도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손해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만약 원고가 원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였다면 원보험금의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로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면책 항변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재보험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면책조항뿐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까지 당연히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해당 사안에서는 재보험계약에서의 특수성도 쟁점이 되었는데, 즉 재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보험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재보험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인 최대선의의무(Utmost good faith)에 의하더라도 재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방지의무의 기준은 일반 보험계약에서와는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보험회사(재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가 경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방지의무 이행의 정도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의칙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의 방지를 위해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하므로 재보험계약이라고 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²⁶⁾

2. 누수 사고 관련 분쟁사례

가. 배경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택이나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누수 원인 부위에 대한 방수 공사비용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경우,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²⁷⁾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건물의 경우

26)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3나74013판결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음

27) 한편, 누수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 외에, 피보험자의 주택·건물 자체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담보하는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도 있음.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예컨대 피보험자 주택·건물의 가구, 벽지, 바닥 피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다만 해당 특약에서는 급배수설비 자체의 수리·교체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데, 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²⁸⁾은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물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②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²⁹⁾

피보험자의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 주택·건물의 손해 부분(예를 들어, 피해 주택·건물의 벽지 교체 비용, 천장 보드 교체 비용, 가재도구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으며, 엄밀히 말하면 피보험자가 피해 주택·건물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담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긴급하게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한 비용(물받이 공사비용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에서 누수의 부위나 원인을 찾기 위한 탐지 비용,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배관 공사비용, 방수 공사비용 등)과 같이 피보험자의 주택·건물과 관련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누수 사고의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 주택·건물의 손해액 자체보다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피보험자 주택·건물의 공사비가 훨씬 고액인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 앞의 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비용들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28) 가족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있음. 한편 과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0년 약관 개정으로 현재는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모두 담보함

29)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 준 경우에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도 있음

〈그림 Ⅲ-1〉 누수 사고 관련 비용



아래에서는 누수 사고 관련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³⁰⁾와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1) 오탐지 비용, 벽면 보수 비용 및 보양 작업 비용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안방 화장실에서 아래층 집으로 물이 흘러가는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누수 수리업체에서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하여 피보험자 주택 안방 화장실에서 청음 탐지 및 가스 탐지를 시행했지만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이후 답수 테스트를 통해서 피보험자 주택의 안방 화장실 방수층이 파손된 것이 누수의 원인임을 확인하고 방수 작업을 시행하였다. 피보험자는 청음 탐지 및 가스 탐지, 답수 테스트, 안방 화장실 벽면 보수 작업, 보양 작업³¹⁾ 화장실 철거 작업 등을 위해 수리업체에 2,5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후 피보험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라 피해 아파트의 수리비 250,000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서 이와 함께 피보험자 주택의 수리에 소요된 수리비 2,500,000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보

3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한 분쟁조정기구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쟁당사자 쌍방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이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음). 당사자 일방이라도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음

31) 공사 시 기존 가구나 가재도구, 바닥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비닐을 씌우는 등 보호하는 작업을 말함

협회사는 피해 아파트에 대한 수리비와 피보험자 자택 수리비 중의 일부는 지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한(즉, 오탐지에 해당하는) 청음 탐지 및 가스 탐지 비용(600,000원)과, 벽면 보수 비용(100,000원) 및 보양 작업 비용(100,000원)에 해당하는 800,000원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절한 사안이다(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20. 7. 8. 조정 제2020-8호).

문제된 항목들 중에서 우선 벽면 보수 비용과 보양 작업 비용에 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벽면 보수는 누수 발생 부위(피보험자 자택의 안방 화장실 방수층)가 아니라 벽면이 갈라진 부분에 대한 미장 공사이고, 보양 작업 역시 누수가 발생한 곳인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 입구 및 이동 통로에 있는 가재도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와 같은 벽면 보수 및 보양 작업은 화장실 방수층이 파손되어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과는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오탐지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었다. 상법과 해당 보험의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지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의 방지·경감이라는 목적을 이룰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청음 탐지 및 가스 탐지는 비록 결과적으로는 누수 원인 탐지에 실패하였지만 누수의 원인을 찾아내어 누수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청음 탐지 및 가스 탐지 비용에 대해서도 누수 원인 탐지에 성공한 담수 테스트 비용과 마찬가지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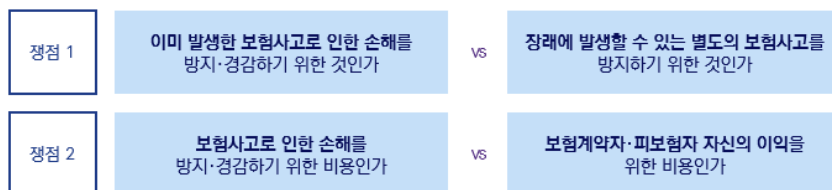
2) 누수 원인 제거를 위한 공사비용

피보험자 거주 아파트에서 아래층 집으로 물이 흘러가는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는 수리업체를 통해서 피해 아파트 욕실 천장의 환풍기와 조명 등을 수리하였다(수리비 580,000원). 또한 피보험자는 수리업체에 피보험자 자택에 대한 수리도 의뢰하였는데, 누수 원인 탐지 결과 피보험자 자택의 온수 배관의 분배기가 파열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되어 해당 분배기를 수리하였다(누수 탐지 및 배관 공사비용으로 40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견적서에는 ‘누수 사고 방지 및 배관 보수’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이에 피보험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라 피해 아파트 수리비 580,000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서, 이와 함께 피보험자 자택 수리에 소요된 400,000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피해 아파트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했지만 피보험자 자택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절한 사안이다(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20. 7. 8. 조정 제2020-7호).

해당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피보험자 자택의 수리비에 대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미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거나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림 III-2〉 피보험자 자택 수리비 관련 쟁점



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쟁점별로 살펴보면, 해당 사건에서 피보험자 자택의 수리비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앞의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방지비용에서 그 대상이 되는 손해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행위는 물이 새는 부위에 물받이 작업을 한다거나 침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물을 퍼내거나 건조시키는 긴급조치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사건에서는 다량의 물이 급격하게 누출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온수 배관 분배기를 수리한 것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 사고의 경우에 단지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만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누수의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 또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만약에 피보험자가 온수 배관 분배기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는 누수가 계속 진행될 수 있고 나아가 분배기 파열 부분이 확대되거나 다른 부위에서도 누수가 추가로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손해방지의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방지·경감할 손해에 대해서 이를 급격하게 진행되는 손해로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면 해당 손해의 규모가 작다거나 또는 점진적인 속도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방지·경감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피보험자 자택의 수리가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 자택의 온수 배관 분배기가 노후화되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해 발생한 수리비는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피보험자 자택에서 누수의 원인을 탐지하고 온수 배관 분배기를 수리한 것이 오로지 피보험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누수가 발생한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온수 배관 분배기를 수리하기 전에는 누수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거나 피해 아파트의 다른 부분으로 누수가 번져서 추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온수 배관 분배기의 수리를 통해서 비로소 보험사고의 원인을 제거하여 손해의 확대 또는 추가 발생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고의 원인이 공작물의 하자인 경우에 해당 하자를 치유하는 행위를 통해서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방지·경감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행위는 공작물의 하자가 치유된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되는 동시에 공작물의 하자 치유 행위를 통해 손해의 방지·경감에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보험회사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 대법원 판례

누수 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그동안은 하급심 판결들만 있었으나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아래에서 해당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과 여자샤워실의 바닥 방수층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했는데, 이 중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 손상으로 생긴 누수로 인해 그 아래 층에 있는 당구장 천장으로 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구장 운영자가 피보험자에게 방수 공사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보험자는 누수 사고 직후 체력단련장 남자샤워실과 여자샤워실의 바닥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보험자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회사에 위 방수 공사비용 7,000,000원(= 누수 정밀 검진비 200,000원 + 여자샤워실 바닥 방수 공사비 3,400,000원 + 남자샤워실 바닥 방수 공사비 3,4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위 7,000,000원은 피보험자의 체력단련장의 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³²⁾

2) 법원의 판단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 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

32) 사실관계는 이 사건의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103590, 106315 판결에 설 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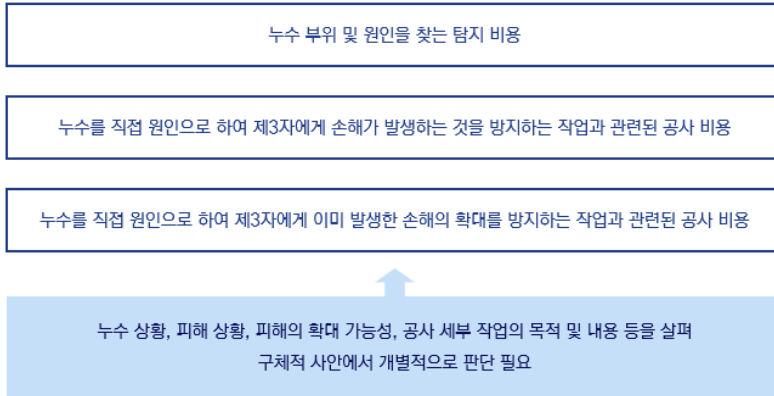
라서 방수 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 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 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자샤워실의 바닥 방수층이 손상되어서 생긴 누수로 인해 아래층 당구장의 천장으로 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 이에 당구장 운영자가 피보험자에게 방수 공사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피보험자가 방수 공사를 실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방수 공사를 지체할 경우 수침 피해가 확산되어 그로 인해 아래층 당구장 운영자의 손해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수 공사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방수 공사비용 중에서 누수 정밀 검진 비용 및 여자샤워실의 방수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라고 인정하였다(즉, 누수 정밀 검진 비용 200,000원과 여자샤워실 방수 공사비용 3,4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되, 다만 위 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향후 피보험자가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은 공제하고³³⁾ 보험회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한편, 법원은 남자샤워실 방수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자샤워실 방수 공사의 경우에는 누수 사고로 인한 수침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남자샤워실 방수 공사로 인해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경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체력단련장을 보수한 것으로서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33) 즉,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3,600,000원 중에서 327,272원(= 3,600,000원 × 1/11)은 부가가치세인데, 이는 향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피보험자의 매입세액에 포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327,272원은 보험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인정되는 보험금의 액수는 3,272,728원(= 3,600,000원 - 327,272원)으로 결정되었음

〈그림 III-3〉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비 중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라. 하급심 판례

이하에서는 하급심³⁴⁾ 판례 중에서 누수 사고 관련 공사비용에 관하여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 주요 사례들을 소개한다.

1) 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107631, 112084 판결(하급심 판례 ①)

피보험자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년 4월 14일 해당 음식점의 화장실과 주방의 바닥 방수층이 파손되어 그 아래층인 지하 2층 기계주차장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만 해당 기계주차장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외에는 별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보험자에게 위 누수 사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도 없었다.

한편 피보험자는 위 누수 사고 이후에 음식점의 화장실과 주방의 바닥 방수 공사를 위해

34) 제1심과 제2심(항소심)을 말함.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에서 심리함.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16,050,100원을 지출하고 해당 비용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비용은 피보험자의 영업장 수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법원은 위 방수 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 공익의 보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의 형평,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지켜야 할 신의성실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그 개념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야 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보험목적물의 수리는 비록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방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의 방수 공사의 시기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³⁵⁾ 해당 공사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영업장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을 보수한 것으로서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손해방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1가단212651 판결(하급심 판례 ②)

피보험자는 건물 2층 및 3층에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층 목욕장에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1층 임차인들이 피보험자에게 누수 사실을 알려왔다고 하면서 2층 목욕장에서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층의 여자 목욕장 전체를 철거하고 3층으로 옮기는 공사를 실시했음을 이유로 해당 공사(2층 여자 목욕장 전체 철거 공사+ 3층 남자 목욕장 일부 철거 및 방수 공사+ 3층 남자 목욕장 옆에 여자 목욕장 설치 공사)에 소요된 비용 82,632,760원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이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에서는 2019년 8월 피보험자의 2층 목욕장에서 1층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었는데 그와 같이 2층 목욕장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시행한 위 공사를 손해방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35) 판결문상으로는 피보험자가 방수 공사를 실시한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드러나지 않음

우선, 위와 같이 2019년 8월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1층 영업장은 그 피해가 경미하여 별도로 피보험자에게 피해 복구 공사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2층 목욕장의 운영으로 인해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1층 영업장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위 공사는 2층 여자 목욕장 전체와 3층 남자 목욕장 일부를 철거하고 여자 목욕장을 3층 남자 목욕장 옆에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보험자가 영업 시설의 일부를 줄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설사 누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한 누수 정도에 비할 때 상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피보험자가 위 공사를 시행한 것이 2020년 12월이었는데 그 무렵에 누수로 인한 1층 영업장의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28. 선고 2022가단111921 판결(하급심 판례 ③)

피보험자는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년 3월 26일 해당 음식점 주방 바닥 방수층과 배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보험회사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00,000원, 누수 방지를 위한 손해방지비용으로 주방 바닥 타일 및 배관 연결부위 등에 대한 교체·보강 작업 비용 6,0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2021년 9월 1일 피보험자는 해당 음식점의 아래층 볼링장 영업주로부터 위 볼링장 탈의실 천장 쪽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2021년 9월 28일 누수탐지업체의 탐지 결과(주방 방수층 파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내용)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21년 10월 4일 해당 음식점 주방 바닥 전체의 철거 및 방수층, 미장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보험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누수로 인한 손해액 700,000원을 청구하면서 위 공사비용 20,750,000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누수로 인한 손해액 600,000원(= 700,000원 -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100,000원)과 누수탐지비용 500,000원, 합계 1,100,000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 공사비용에 대해서 이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래층 볼링장의 탈의실 천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해 발생한 물 번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피보험자가 볼링장 영업주에 대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700,000원에 불과한 점, 피보험자가 2021년 9월 1일 볼링장 영업주로부터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사실을 듣고 즉각적인 누수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 한 달이 지난 2021년 10월 4일에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보험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누수 탐지 및 누수 원인의 제거를 위해 음식점 주방 전체에 대한 철거 및 방수층, 미장 공사가 필요했다는 사실 및 공사비용 20,750,000원 전부가 피보험자의 선관주의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180092 판결(하급심 판례 ④)

피보험자는 식당 건물 소유자로, 해당 건물의 지하 1층에 입주한 사무실 운영자가 2019년 8월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피보험자에게 알렸으나 피보험자는 누수 원인 및 지점을 확인하지 못해서 방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 후 2019년 12월 초에 위 사무실 운영자가 피보험자에게 누수가 더 많이 진행되었다고 알렸고 피보험자는 2020년 1월 18일 식당의 주방 배관 설비, 방수 공사, 타일 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피보험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시설 및 집기 비품, 재고자산의 수침 피해로 인한 손해와 위와 같은 주방 방수 공사비용(22,410,000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수침 피해로 인한 손해 상당액인 2,900,000원은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주방 방수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 주방 방수 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누수 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주방 방수 공사의 내용과 규모, 긴급성 여부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인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였다.

즉,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고 이는 피보험자가 소유·사용·수익하는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물

건보험과는 구별되므로, 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직접적으로 방지·경감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서의 주방 방수 공사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영업장이자 보험목적물인 식당의 주방을 보수한 것으로서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손해방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마) 광주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8가단535165, 2019가단507921 판결
(하급심 판례 ⑤)

피보험자 거주 아파트 욕실 바닥층의 파손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해서 그 아래 층 천장으로 물이 흘러 피해 아파트 천장의 마감재가 물에 젖는 등의 수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보험자는 피해 아파트의 공사를 해주고 이에 더하여 피보험자 아파트 중에서 누수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안방 화장실 철거, 바닥 누수 방지 공사,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하고 해당 공사비용 30,742,000원(= 안방 화장실의 바닥 철거 및 방수 공사비 20,030,000원 + 원상복구 공사비 10,712,000원)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이의 지급을 거부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손해방지비용에서 그 방지·경감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는 것이며 나중에 재발할 사고에 대비해서 지출하는 보험목적물 수리 비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보험목적물의 수리는 비록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방지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만약 보험목적물의 방수 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에 보수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주의로 하자를 발견하지 않았거나 하자를 발견하고도 방치했다는 이유로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에서 방지·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데,³⁶⁾ 이와 같은 결론은 보험계약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여 부당

36) 해당 보험의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할 보험금에서 노력을 하였더라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을 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공사비용은 보험목적물인 피보험자 아파트를 보수하는 데에 들인 비용으로서 손해방지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

가) 인천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단247196 판결(하급심 판례 ⑥)

2018년 2월 26일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누수로 인해 그 아래층 아파트의 거실과 천장 등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보험자는 2018년 3월 2일 누수 업체를 통해 누수 탐지를 실시한 결과 해당 누수 사고가 피보험자 아파트의 화장실 앞 난방 배관의 노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아파트 거실 배관에 대한 부분 수리를 진행하였다(1차 수리). 그런데 1차 수리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 발생하자, 2018년 4월 15일 피해 아파트에 천장 도배 시공을 해주고, 피보험자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해당 보험회사의 조사관으로부터 전체 배관의 노후로 추가 누수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다음, 2018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였다(2차 수리)

피보험자는 2차 수리를 마친 후 보험회사에 총 8,950,000원(= 1차 수리비 500,000원 + 피해 아파트 천장 도배 시공비 450,000원 + 2차 수리비 8,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피해 아파트에 대한 수침 피해 복구액인 450,000원에 대한 지급 의무만 인정하고 피보험자 아파트에 대한 배관 수리 부분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피보험자가 청구한 8,950,000원 전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보험회사의 의뢰로 이 사건 누수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손해사정인도 피보험자 아파트의 바닥 전체에서 배관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점, 피보험자는 1차 수리 이후에도 계속 아래층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서 2차 수리를 한 것인데 당시 위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아파트 바닥 전체에서 배관 누수가 있음을 확인받고 그의 안내에 따라서 2차 수리를 진행한 점, 해당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방지·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지급 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1차 및 2차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나) 대구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319543 판결(하급심 판례 ⑦)

2018년 12월 1일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거실 부분 배관에서 누수로 인해 아래 층 아파트의 주방과 발코니 쪽에 물이 떨어져 거실 천장과 소파를 비롯한 가재도구 일부가 물에 젖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보험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피해 아파트 거주자에게 보험금 9,600,000원(= 피해 아파트 수리비 8,300,000원 + 임시주거비용 600,000원 + 가재도구 손해 900,000원 -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보험자는 2018년 12월 12일 누수 수리 전문업체 A를 통해 피보험자 아파트의 온돌마루 등 거실 바닥을 철거하고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거실 배관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고, 한편 마루 업체 B를 통해 철거한 온돌마루를 재설치하는 공사(온돌마루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보험자는 위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9,393,000원(= 거실 배관 교체 공사비용 6,028,000원 + 온돌마루 설치 공사비용 3,365,000원)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거실 배관 교체 공사비용 중에서 견적서상 '배관교체작업'이라고 기재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인 350,000원에 보험회사가 책정한 통상적인 누수탐지비용인 300,000원을 더한 650,000원만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며 나머지 공사는 피보험자 아파트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법상 손해방지의무가 요구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는 그때부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장 누수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① 일시적으로 누수가 발생했지만 보험목적물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당장 추가적인 누수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방지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보험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은 손해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장래에 누수 가능성이 있어서 보험목적물을 수리하고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② 누수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가 지속되고 있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는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아서 계속적인 누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목적물을 수리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유익하므로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목적물을 수리했는데 그 결과 보험목적물의 가치가 보험사고 발생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기준에 따라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거실 배관 교체 공사비용 6,028,000원에 대해 피보험자 아파트에서 누수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우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에서는 누수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배관의 부분적인 수리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실 전체의 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경우라고 보았다.

- 2018년 12월 1일 누수 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의뢰에 따라 누수 수리 전문업체 A가 2018년 12월 초에 피보험자 아파트에서 누수 원인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누수 지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A는 피보험자에게 누수가 유력한 부분만을 수리하거나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피보험자는 누수가 유력한 부분만을 수리할 것을 요청하여 A는 당초 누수 지점으로 유력하다고 판단한 부분의 배관 일부를 수리하였던 점
- 그러나 이와 같이 배관 일부를 수리하였음도 불구하고 재차 누수가 발생하자 A는 피보험자에게 부분적인 수리로는 누수를 방지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보험자는 견적서를 받아본 후 2018년 12월 12일 공사비용 6,028,000원을 지급하고 A를 통해 거실 전체의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한 점

- 거실 배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A는 거실 내 누수 지점이 산발적으로 7군데 이상이었고 보일러 온수로 인한 열화 또는 백화 현상으로 인하여 거실 내 배관이 전체적으로 부식된 것을 확인한 점
- 피보험자는 거실 배관 교체 공사 전에 정확한 누수 지점을 확인하고자 별도로 누수탐지업체에도 누수 원인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도 “난방관의 열화 현상으로 집 전체적으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거실 전체의 수리를 권장”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 보험회사도 거실 배관 교체 공사 견적서상 ‘배관교체작업’이라고 기재된 공정에 해당하는 비용인 350,000원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거실 전체의 배관 교체가 필요하였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음으로, 배관 교체를 위한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적서상 ‘배관 교체작업’ 공정에 해당하는 비용 350,000원(아래 <표 III-1>의 견적서상 5번 공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거실배관 교체 공사를 위해 A에 지급한 6,028,000원의 비용 전체가 거실 배관 교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 등의 비용으로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표 III-1> 거실 배관 교체 공사 견적서 항목

순번	품목	수량	단가(원)	금액(원)
1	온돌마루 철거작업	1	500,000	500,000
2	바닥 철거작업	1	1,200,000	1,200,000
3	싱크대 철거 및 재설치작업	1	300,000	300,000
4	타일작업	1	400,000	400,000
5	배관교체작업	1	350,000	350,000
6	바닥복구작업	1	1,400,000	1,400,000
7	자재비	1	300,000	300,000
8	공구손료	1	50,000	50,000
9	폐기물	1	400,000	400,000
10	일반경비	1	200,000	200,000
11	청소	1	380,000	380,000
12	이윤	1	548,000	548,000
합계	-	-	-	6,028,000

거실 바닥에 매설된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싱크대 등 설비와 대리석, 타일, 온돌마루 등 바닥을 철거하는 작업이 먼저 수행되어야 하고(견적서 1번~4번 공정), 다음으로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배관을 신규 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견적서 5번 공정), 그 후에 철거한 바닥 등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견적서 6번 공정). 이러한 철거 및 복구 작업을 하지 않은 채로는 배관을 교체할 수 없고, 그 밖에 자재비나 폐기물 처리비 등의 비용도 배관 교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재료 및 작업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실 배관 교체 공사를 위해 지출한 6,028,000원 전체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견적서상 '배관교체작업' 공정의 비용만을 떼어내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배관을 교체한 이후에 온돌마루를 재설치하기 위해서 지출한 온돌마루 설치 공사비용 3,365,000원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배관 교체를 위해서는 기존의 온돌마루를 철거하는 것이 필요했고 따라서 새로운 온돌마루를 재설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 아파트의 기존 온돌마루는 아파트 건축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서 내용 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으로 보이고 신품 온돌바닥으로 교체함에 따라 그 가치가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³⁷⁾ 등에 비추어 온돌마루 설치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 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11409 판결(하급심 판례 ⑧)

2020년 5월 2일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온수 배관과 수도 배관의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그 아래층에 있는 A호 주택과 B호 주택의 천장 마감재 등이 물에 젖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보험자는 해당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20년 5월 12일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였고, 이후 2020년 6월 초에 A호 주택 거주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누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주택의 배관을 모두 잠그고, 이후 2020년 9월 25일부터 피보험자 주택과 A호 주택 및 B호 주택을 수리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보험자는 위 수리 비용을 지출하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따라 보험회사에 합계

37) 기존 온돌마루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존 온돌마루의 가치 등에 관한 피보험자의 주장 및 증명이 없다고 보았음

27,316,5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A호 주택 수리 비용 2,904,000원 + B호 주택 수리 비용 5,863,000원 + 피보험자 주택 공사비용 18,549,500원), 보험회사는 A호 주택과 B호 주택 수리 비용은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피보험자 주택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피보험자 주택 공사에는 해당 주택의 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전체의 교체 공사, 화장실 등 천장 시공 공사, 콘크리트 타설 공사 및 그로 인한 방 도어와 샷시 교환 공사, 강화마루 재시공 및 불박이장 재설치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원은 이 중에서 보일러 및 수도 배관의 철거와 그 교체에 들인 비용 및 그에 따른 부수처리 비용 합계 8,700,000원(= 화장실 철거 공사 800,000원 + 보일러 배관 공사 2,000,000원 + 냉·온수 수도 배관 일절 2,400,000원 +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 2,000,000원 + 폐기물처리 900,000원 + 철거 인력공 6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주택의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로 보고 해당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다.³⁸⁾

누수탐지기 검사 결과 3곳(온수 배관 2곳, 수도 배관 1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주택은 건축한 지 약 40년이 지난 건물로 누수 사고 당시 주택 바닥에 설치된 온수 배관 및 수도 배관이 전반적으로 부식되었거나 파열되어 있는 등 매우 노후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누수 지점만 수리하는 경우에는 풍선효과에 의해 다른 배관에 누수 현상이 반복될 것이 명백하여 노후화된 배관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위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불박이장 철거 및 재시공, 강화마루 공사, 샷시 시공, 타일 시공, 페인트 공사 등),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에 대해 통상 지출해야 할 필요비 성격의

38) 한편 이 사건의 1심에서는 피보험자 주택 공사비용 전부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전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가합14 판결). 누수 사고로 인한 A호 주택 및 B호 주택의 피해는 상당 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보험자가 누수 사고를 인지했을 당시에는 해당 누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점이었던 점, 해당 누수 사고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해서 피보험자 주택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졌고 당시는 누수 사고로 인한 손해가 고착화·고정화되어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 여지가 없는 상태였던 점(피보험자가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였고 배관을 모두 잡으며 더 이상 누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 주택 공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임. 그러나 항소심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1심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판단이 이루어졌고,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에 판단이 이루어졌음) 피보험자 주택 공사비용 중에서 보일러 및 수도 배관의 철거와 그 교체에 들인 비용 및 그에 따른 부수처리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것임

공사라 할 것이므로 이에 들인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104799 판결(하급심 판례 ㉠)

2016년 8월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는 음식점 주방 수도관이 원인이라 판단하여 수도관을 교체하였는데 누수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피보험자는 임시방편으로 천장 물받이 5개를 설치하고 2017년 1월 20일 지하 주차장 천장 2곳을 뚫어서 원인을 확인한 후 2017년 2월 20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음식점을 휴업하고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보험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위 공사비용 등 48,490,000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실시한 공사비용 중에서 일부인 6,002,959원(= 페인트 공사비용 3,352,653원 + 지하 물받이 공사비용 2,319,945원 + 바닥 타공과 타일 공사비용 330,361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는 피보험자가 정확한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공사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한 것이며 누수 원인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보아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우선 해당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청구한 공사비용에는 공사를 위해 주방 장비 등을 이전 및 설치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저장고 이전 설치비, 주방 이전 세팅 작업비, 홀 이전 세팅 작업비 등),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공사비용 중에서 실제로 피보험자가 지출하였음이 증명된 비용은 <표 III-2>와 같은데, 법원에서는 해당 공사비용 중에서 일부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고 일부는 부당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 지급 대상은 13,036,953원으로 보았다.³⁹⁾

즉, 법원에서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인정한 항목 외에도) 누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와 부위를 찾기 위해 실시한 수도관 공사, 바닥 철거 공사비용과 누수의 근본적 원인인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비용을 추가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누수 사고에서는 누수를 일

39) 다만 그 10%인 1,303,695원(= 13,036,953원 × 0.1, 원 미만 버림)은 부가가치세인데, 이는 향후 피보험자의 매입세액에 포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은 11,733,258원(= 13,036,953원 - 1,303,695원)으로 인정됨

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비용 또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배관 교체 후에 이루어진 방수 공사 및 시멘트 공사, 타일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표 Ⅲ-2〉 공사 항목별 지급 대상 여부

구분	공사명	비용(원)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비고
대물 복구 공사	페인트 공사	3,352,653	[지급 대상] 제3자에 발생한 손해	보험회사도 인정
1차 손해방지비용	지하 물받이 공사	2,319,945	[지급 대상]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비용	보험회사도 인정
	주방 및 홀 수도 공사	893,096	[지급 대상] 누수가 의심되는 수도관을 외부로 노출시키는 공사로, 정확한 누수 발생 장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탐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	법원에서 추가 인정
	바닥 타공 및 타일 공사	330,361	[지급 대상] 누수 탐지 비용	보험회사도 인정
2차 손해방지비용	철거 공사	4,362,418	[지급 대상] 바닥 아래 있는 수도관 중 어느 부 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는 바닥을 모두 철거 하여 수도관을 확인해야 하므로, 누 수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	법원에서 추가 인정
	배관 공사	1,778,480	[지급 대상] 누수 원인인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	법원에서 추가 인정
	방수 공사 및 시멘트 공사	4,401,959	[지급 대상 아님] 향후 다른 누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법원에서도 부정
	타일 공사	3,401,639	[지급 대상 아님] 누수 방지 비용 아님	법원에서도 부정

마) 인천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가단261963 판결(하급심 판례 ⑩)

피보험자는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의 1, 2층을 제3자들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2020년 8월 20일 해당 건물 2층의 싱크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장판이 손상되고 그 아래 1층 식당의 천장이 누수로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1차 누수 사고). 이에 피보험자의 의뢰를 받은 누수 업체 A는 배관 밸브를 잠갔는데도 누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싱크대 하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싱크대 하수도관을 수리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일 다시 2층 바닥 장판이 누수로 손상되고 1층 식당의 주방 천장이 누수로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2차 누수 사고). 이에 A업체는 바닥을 뜯지 않고 누수 탐지를 해봤지만 누수 지점을 확인할 수 없었고, 바닥을 뜯어낸 후 난방 배관과 수도 배관을 나누어 누수 지점을 확인한 결과 난방 배관 및 수도 배관 모두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해당 건물은 지은 지 29년 된 건물로서 누수 당시 2층 바닥에 설치된 난방 배관과 수도 배관이 전반적으로 노후된 상태에 있었음) 이들 배관들과 하수 배관을 모두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A업체가 수행한 공사 내역은 배관 철거 작업, 난방 배관 설치 작업, 수도 배관 설치 작업, 하수도 배관 설치 작업, 난방 바닥 및 석분작업이었다.

피보험자는 누수 사고로 인해 임차인에 대한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누수가 발생하는 배관을 찾아내 교체하는 공사를 하여 그 비용으로 12,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임대인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이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① 배관을 철거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를 위한 행위로 보았지만, 그 후에 ② 배관을 새로 설치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를 위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누수 지점 탐지를 위한 작업에 들인 비용과 누수가 확인된 배관의 철거에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 누수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제3자인 임차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고, 보험회사는 배관 철거 작업과 해당 작업자 인건비를 합한 2,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비용 외에, 2층 바닥에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고 바닥층을 새로 깔아 설치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누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범위를 초과해서 임대인이자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통상 지출하여야 할 필요비 성격의 공사이며 이에 들인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 정리 및 분석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경우에 ① 피해 주택·건물 손해, ② 누수 관련 긴급조치 비용, ③ 누수 관련 탐지 비용, ④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용이 배상책임보험 담보와 관련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우선 ①의 피해 주택·건물 손해 부분은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에서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으로, 이는 배상책임보험의 주된 급부의 문제이지 손해방지비용의 문제는 아니다.

다음으로 ② 누수 관련 긴급조치 비용은 일시적으로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를 하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인데(예컨대 물받이 공사비용), 이는 손해방지비용의 전형적 사례로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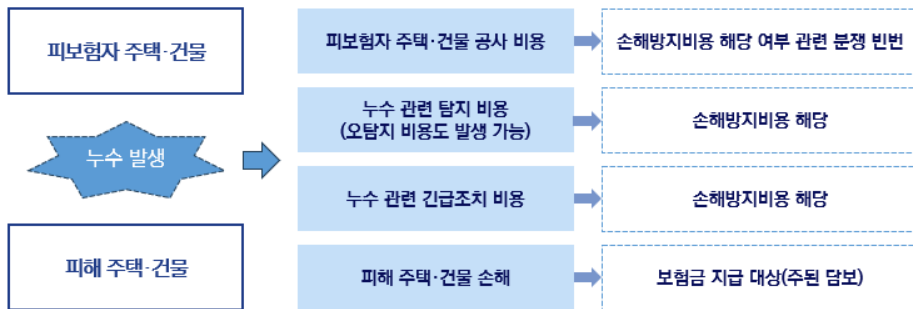
③의 누수 관련 탐지 비용은 누수 원인, 누수 부위를 찾는 작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통상적인 누수 탐지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별로 없었다.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누수 탐지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③과 관련하여 오탐지 비용, 즉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기 위해 탐지를 실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우에 해당 탐지 작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손해방지비용으로서 이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쟁사례가 있는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서는 오탐지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법에서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노력을

한 이상 그 결과 실제로 손해의 방지·경감의 효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법상 손해방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④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용 항목이다. 피보험자 주택·건물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배관 교체 공사나 방수 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 공사비용 중 어디까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Ⅲ-4〉 누수 사고 관련 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누수 사고의 경우 누수가 한 번 발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계속되는 성격이 있고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누수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보험자 주택·건물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경우에,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한다는 목적과 피보험자 주택·건물을 개량하고 보수하는 목적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사비가 손해방지비용인지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비용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누수 자체로 인한 피해액보다 피보험자 주택·건물의 공사비가 훨씬 고액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 또는 제3자에게 이미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는 일응의 원칙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하여 방수 공사 등이 실시된 경우에 해당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누수 상황,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 공사의 세부 작업의 목적·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피보험자 주택·건물의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경우와 항목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나 항목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다수의 판례들이 따르고 있는 어떤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설명할 수 있겠다.

1)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우선, 해당 사건에서의 누수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 즉 누수가 발생한 부위가 아닌 곳에 실시한 공사비용이나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한 공사 중에 함께 시행되기는 했지만 누수 원인 제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작업에 대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서 누수가 발생한 화장실의 방수층이 아니라 화장실의 벽면에 실시한 보수 공사비용 및 기존 가구나 바닥 등의 손상을 막기 위한 보양 작업 비용에 대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 아래층으로 수침 피해가 발생한 직접 부위가 아닌 남자샤워실의 방수 공사비용에 대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하급심 판례 ⑨에서 누수 원인인 주방 배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위해 주방 장비 등을 이전·설치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음으로, 누수의 부위나 정도,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해서 공사의 내용과 규모가 과도한 경우에 해당 공사비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하급심 판례 ①에서 누수 사고로 아래층 기계주차장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외

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보험자에게 누수 사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도 없었는데 음식점 화장실과 주방의 방수 공사비 약 1,6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공사비를 전액 불인정함

- 하급심 판례 ②에서 목욕장 누수 사고로 아래층에서 입은 피해가 경미하여 별도로 피보험자에게 복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없었는데 목욕장 철거 및 이전 공사비용 약 8,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공사비를 전액 불인정함
- 하급심 판례 ③에서 누수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아래층에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70만 원인데 음식점 주방 바닥 방수 공사비 약 2,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공사비를 전액 불인정함
- 하급심 판례 ④에서 수침 피해 금액은 290만 원이었는데 식당 주방 방수 공사비 약 2,2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공사비를 전액 불인정함

또한, 누수 사고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에서 진행된 공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다.

- 하급심 판례 ②에서 누수 사고는 2019년 8월에 발생했는데 방수 공사는 2020년 12월에 시행한 경우 방수 공사를 할 무렵 누수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하급심 판례 ③에서 아래층으로부터 누수로 인한 피해 사실을 듣고 즉각적인 누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약 한 달이 지나서 방수 공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함

아울러,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 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복구 공사비용에 대해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 하급심 판례 ⑦에서 누수 원인인 배관 교체 공사 후에 이루어진 온돌마루 재설치 공사비용에 대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하급심 판례 ⑧에서 누수 원인인 배관 교체 공사 후에 이루어진 불박이장 재시공 및 강화마루 공사 등의 비용에 대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하급심 판례 ⑨에서 배관 교체 후에 이루어진 방수 공사, 시멘트 공사, 타일 공사비용에 대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경우들을 보면, 누수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인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경우 해당 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이 고려되었다.

- 하급심 판례 ⑥에서 보험회사 의뢰로 누수 사고 조사를 실시한 손해사정인의 확인을 받고 그의 안내에 따라 배관 교체 공사를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함

또한 누수가 계속되는 상황, 특히 1차 수리에도 불구하고 재차 또는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 하급심 판례 ⑥, ⑦은 누수 사고로 배관에 대한 부분 수리를 진행했으나 누수가 계속 발생하여 전체 배관을 수리한 사안으로, 배관 교체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됨
- 하급심 판례 ⑨도 누수 사고로 수도관을 교체하였음에도 누수가 계속 발생하여 배관 교체 공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배관 교체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됨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예컨대 누수의 원인이 방수층 손상인 경우 방수층 공사비용, 배관의 노후인 경우 배관 교체 공사비용)은 해당 공사가 누수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에 비해 정도가 과다하지 않은 이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만 배관 교체와 관련한 공사비용 중에서 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별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있었다.

- 하급심 판례 ⑦, ⑧, ⑨에서는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 및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 비용에 대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음
- 하급심 판례 ⑩에서는 배관 철거 작업과 배관을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구분하여, 배관 철거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새로운 배관 설치 작업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음⁴⁰⁾

40) 공사 견적서 또는 내역서상 '배관 공사' 또는 '배관 교체 공사' 항목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배관 교체 작업을 배관 철거 및 새로운 배관 설치 작업으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하급심 판례 ⑩ 사안에서는 공사 견적서 또는 내역서상 배관 철거 작업과 배관 설치 작업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3. 소결

본 장에서는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관련 분쟁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일반론과 관련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손해의 범위, 손해방지의무 위반 시 효과와 관련된 분쟁사례들이 있었고 각 쟁점별로 판례의 입장은 아래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관련 일반 분쟁사례

쟁점	판례의 입장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방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함 •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경우 그때부터 손해방지의무가 생김
손해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의 결과로서 생기는 손해를 의미함 • 보험회사의 대위권, 구상권 등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인한 손해는 불포함함
손해방지의무 위반 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경우 손해방지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에서 공제 가능함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함

다음으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손해방지비용 관련 분쟁사례들 중 상당수는 누수 사고와 관련된 것이었다. 피보험자의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경우에 그러한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들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들이었는데, 누수 관련 긴급조치비용이나 누수의 원인·부위를 찾기 위한 탐지비용의 경우에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별로 없었으나,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에 실시한 공사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 공사비 등)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응의 경향을 요약해보면 아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경향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수 발생 부위가 아닌 곳에 시행하는 공사 •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 없는 작업 • 누수의 부위,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해 공사의 내용이나 규모가 과도한 경우 • 누수 사고 한참 후에 진행된 공사 • 누수 원인 제거 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복구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에 알리고 소속 직원이나 손해사정사 등의 확인을 받고 진행된 공사 • 누수가 지속되는 상황(예: 1차 수리 후에도 계속 또는 재차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공사 •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 (범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음)

살피건대, 누수 사고에 있어서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주택·건물에 배관 교체 공사나 방수 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 공사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누수의 상황,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과 규모, 피해 확대 가능성, 공사의 시기, 공사의 규모, 공사의 세부 작업의 목적 및 내용, 보험회사의 확인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누수 사고에 있어서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는 원칙을 쉽게 적용하여 손해방지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IV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검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분쟁사례들을 토대로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 방안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해본다.

1. 합리적 해석 방안

가. 일반 분쟁사례 관련

앞서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우선 III의 1장에서 살펴본 일반 분쟁사례에서 제기된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현재 판례의 결론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우선 ①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쟁점 관련,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개시되는 것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손해를 방지·경감할 필요성을 생각하면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생긴다고 보되 다만 그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는 긴급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②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방지·경감해야 할 손해의 범위 관련해서도, ‘피보험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의 결과로서 생기는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험회사의 대위권·구상권과 같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되는 손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공익적 취지 때문인데 그 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③ 손해방지의무 위반 시 효과에 대해서도 현재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했다라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액만큼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라면 별도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서도 당황하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과실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해당액만큼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관련

누수 사고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에 실시한 공사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와 일부 판례에서는 누수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작업과 관련된 비용(예컨대 누수의 원인이 노후화된 배관이었던 경우 배관 교체 비용, 누수의 원인이 방수층 파손이었던 경우 방수층 공사비용)에 대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경우들이 많았다.

학계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의 결론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고,⁴¹⁾ 자기 물건을 보수하는 것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며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은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누수를 막기 위한 비용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⁴²⁾

살피건대,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쉽게 인정해버리고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1) 박인호(2020); 조규성(2021)

42) 김선정(2020); 김현태·이경재(2022); 김혜영(2023)

1)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및 내용에 따른 검토

‘손해방지비용’이라는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비용 청구권으로서의 측면만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 청구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정해놓은 조항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⁴³⁾ 분쟁사례들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핏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권리의 문제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의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⁴⁴⁾

이처럼 손해방지비용은 기본적으로 손해방지의무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누수 사고에 있어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에 실시한 공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누수 사고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피보험자가 자신의 주택·건물에 방수 공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손해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손해방지의무의 범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서도 보았듯 상법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만약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마땅히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취하였을 조치를 단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확대를 방지한다면 이는 도덕적 위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또한 보험단체에 피해를 입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43)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약관상 규정 방식의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신용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손해방지비용이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비용이라는 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화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으로는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조항과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조항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손해의 방지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서 상법의 취지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향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44) 송옥렬(2024)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서 당연히 행하였을 정도의 행위로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보험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손해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인 것이지 그 이상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의무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⁵⁾

손해방지의무에서의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조항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등이 그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보험계약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최대 선의의 원칙이 특별히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이 그 손해의 범위에 보험회사의 손해까지 포함시킴으로써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구상권을 확보하고 대위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라고 본 판례⁴⁶⁾에 의하면 법원 역시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해당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할 수 있었던,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행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했던 정도의 행위를 하라는 것이 상법에서 요구하는 손해방지의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손해의 발생·확대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일 것(긴급성), 행위의 내용이나 목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손해의 방지·경감과 직접 관련되어 있을 것(직접 관련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 것이다.

판례들을 보더라도 손해방지의무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긴급성’과 ‘직접 관련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의 근거로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관련 분쟁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고,⁴⁷⁾ 누수 사고 분쟁에서 피보험자 주택·건물에 대한 공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아래층의 피해가 심각하

45) 이성남(2020); 申出 哲(2012)

46) 서울고등법원 1999. 2. 2 선고 98나36360 판결

4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등

여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는지 등을 고려하였으며,⁴⁸⁾ 누수 사고 분쟁에서 누수로 인한 수침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⁴⁹⁾ 또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하여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의하더라도, 원래 손해방지의무라는 것은 어떠한 긴급한 상황에서 취했어야 할 조치를 예정했던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의하면,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에 따라야 하고, 이는 긴급성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수익하는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재물보험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런데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으로서의 본질이나 보험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누수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주택·건물 공사비용을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쉽게 광범위하게 인정해버린다면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⁵⁰⁾ 특히 누수의 원인이 배관 등의 노후화로 인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노후화된 배관 등을 교체하는 비용은 재물보험에서도 담보하지 않는 항목인데(상법상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면책사유에 해당함)⁵¹⁾ 이를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회

4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1가단212651 판결 등

49)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등

50) 김혜영(2023)

51) 상법 제678조

사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소유·점유·관리하는 목적물의 노후나 하자로 인한 일상적인 수리·보수 비용을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무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누수 사고에서는 누수로 인해 아래 층이 입은 피해보다 피보험자의 주택·건물 공사비용이 훨씬 고액인 경우가 많은데,⁵²⁾ 주된 급부인 손해배상액에 비해 손해방지비용의 금액이 과다한 것도 기형적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의 1)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손해방지비용을 넓게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수 공사 비용 등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쉽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약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해당 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안들에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이 깎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3)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정리해보면, 누수 사고에 있어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에 실시한 방수 공사 등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만약 피보험자가 자신의 주택·건물에 해당 방수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손해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누수의 상황,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과 규모, 피해 확대 가능성, 공사의 시기, 공사의 규모, 공사의 세부 작업의 목적 및 내용, 보험회사의 확인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과 같은 정도와 규모의 누수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만약 피보험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그 제3자의 수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그러한 내용과 규모의 방수 공사를 시행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인가, 피보험자가 해당 방수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제3자가 입는 피해액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수침 피해의 발생·확대를 방치한 것으로서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있고 신의성실의

52) III의 2장에서 살펴본 하급심 판례들을 보더라도 피해 주택·건물의 손해액보다 피보험자 주택·건물에 실시한 공사 비용이 훨씬 고액인 경우가 많았음(하급심 판례 ①, ③, ④, ⑥ 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인가, 피보험자가 해당 방수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제3자의 수침 피해가 확대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해당 방수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제3자의 수침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인가, 해당 방수 공사는 제3자의 수침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등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수 사고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손해방지의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누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하고 직접적인 조치일 것이며(예컨대 밸브 잠금, 물받이 설치, 물빼기나 건조 작업 등) 원칙적으로 이러한 긴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1차적인 긴급조치를 통해서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수침 피해가 중단되고 당장의 추가적인 누수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종료된다고 볼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긴급조치를 통해서도 누수가 중단되지 않고 누수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기존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로서,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제거하는 행위를 위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방지비용은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되는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제한해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누수의 원인인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비용 중에서 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별로 판단이 엇갈리기도 하였는데(즉, 배관 교체 및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 비용에 대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고, 배관 철거 작업과 배관을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구분하여 배관 철거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새로운 배관 설치 작업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배관 교체 작업 중 배관을 철거하는 작업과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이 구분되는 경우라면 배관 철거 작업에 대한 비용만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노후화된 배관이 누수의 원인인 경우 해당 배관을 철거함으로써 누수의 원인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사 내역서나 견적서 등에 의할 때 배관 철거 작업과 새로운 배관 설치 작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단 배관 교체 작업 비용 전체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밖에 없

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배관을 설치함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분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서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용을 산정하여 그만큼 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⁵³⁾ 이러한 논리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손해방지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했던 비용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 IV-1〉 누수 원인 제거 공사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기준
<p>"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해당 방수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손해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 (누수 상황,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 및 규모, 피해 확대 가능성, 공사의 시기 및 규모, 공사 세부 작업의 목적 및 내용, 보험회사의 확인 여부 등) ← 손해방지의무의 범위 판단 시 '긴급성' 및 '직접 관련성' 요건 고려
구체적 검토
<p>① 원칙: 누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긴급조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예: 물받이 공사 비용, 건조 작업 비용 등)</p> <p>② 예외: 직접적인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누수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누수 원인 제거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음</p> <p>③ 다만 ②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누수 원인 제거 비용 중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되는 행위에 대한 비용만 손해방지비용에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 제거를 위한 직접 행위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해당 비용만 손해방지비용(예: 배관 철거 비용 O, 신제품 배관 설치 비용 X) - 원인 제거를 위한 직접 행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신제품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을 공제

2. 입법적 개선 방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에 관하여 우리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

5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임. 누수 사고로 온돌마루 등에 수침 피해를 입은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온돌마루 등을 신제품으로 교체 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손해액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음

를 부담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손해의 범위, 위반 시 효과 등에 관한 내용이 해석에 맡겨져 있으며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법 제680조 제1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단기 과제

먼저, 기존에 판례나 학설 등을 통해 내용이 정리되어 사회적 이견이 별로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법 조항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로,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에 관한 내용을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은 판례 및 학설상 확립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 보험법에서도 손해방지의무 조항에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⁴⁾

한편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분쟁사례가 있고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손해방지의무가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이러한 내용도 법 조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은 법 조항으로 명문화하기에는 다소 불명확한 개념이므로 지금처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태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통해서 운영하는 쪽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54) 일본의 경우 구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에 노력할 것을 요하며, 다만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및 전보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하여(제660조), 현행 우리 상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2008년 보험법을 제정하면서 보험법 제13조에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동법 제23조에서 “제13조의 경우에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을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 한편 일본에서는 위 조항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운영하여(보험법 제26조),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다음으로 손해방지의무에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방지 및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된 분쟁사례도 있고, 이에 대해 판례는 피보험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로 생기는 손해로 보며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법문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 정도로 규정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 시 효과에 대해서도 관련 분쟁사례들이 있으며, 판례 및 학설을 통해 정립된 내용을 법에서 명시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금에서 공제한 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나. 장기 과제

다음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⁵⁵⁾

우선, 손해방지의무의 인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내용도 법에서 직접 명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한편, 현행 상법은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도 대해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⁵⁶⁾

이와 관련하여, 2008년 상법 보험편에 대한 개정 논의 시에도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었다. 즉,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되 보험회사의 지시나 동의에 의한 것인 경우에만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도 부담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손해방지활동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의 지시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시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

55) 아직까지 판례와 학설을 통해 입장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임

56) 양승규(1994); 장경환(2005)

유로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을 합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보험회사에 유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점,⁵⁷⁾ 손해방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공익적 이유 및 보험계약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⁵⁸⁾ 등을 이유로 실제 입법으로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

살피건대, 기본적으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보험회사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보험회사의 부담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익적 취지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손해방지비용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방지비용이 해당 보험에서 담보하는 주된 급부의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보험의 기본 원칙을 해할 수도 있다. 또한 실제로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상황⁵⁹⁾이라는 것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손해방지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으로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더라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만약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해당 손해방지의무 이행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지시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정해놓을 수 있겠다.

57) 법제사법위원회(2008)

58) 정찬형(2007)

59) 이론적으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했지만 전손이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IV-1〉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대한 개정안

구분	내용
현행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1안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해당 의무가 이행되었더라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제1항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이를 부담한다.
2안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요구되는 긴급하고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해당 의무가 이행되었더라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제1항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을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 다만 해당 의무의 이행이 보험자의 지시 또는 동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사고의 상황이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운영하여 약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손해방지비용은 원래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처리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할 것인지는 해당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의 문제(즉, 피보험자나 보험회사 어느 한쪽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보험상품 설계의 문제)이므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⁶⁰⁾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0) 古瀬村邦夫(1957); 江頭憲治郎(2022)

3. 맺음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안만 놓고 본다면 손해방지비용을 넓게 인정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이 먼저 전제되는 개념으로서, 손해방지비용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도 넓어지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상법 제680조 제1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2024),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
- 김선정(2020),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30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성태(2002), 『보험법강론』, 법문사
- 김현태·이경재(2022), 「누수 사고의 보험 보상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김혜영(2023), 「누수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보험법학회
- 박세민(2021), 『보험법』, 박영사
- 박인호(2020), 「손해방지의무와 손해방지경감비용에 대한 고찰 - 책임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 법제사법위원회(20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편) 검토 보고』
- 손주찬·정동운(2003), 『주식 상법 [보험]』, 한국사법행정학회
- 송옥렬(2024), 『상법강의』, 홍문사
- 신정환(2023), 「AI Tool을 활용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현황 분석: 지급보험금을 중심으로」, 『CIS 이슈리포트』, 2023-3호, 한국신용정보원
- 양승규(1994), 『보험법』, 삼지원
- 이성남(2020),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 장경환(2005), 「상법 제4편(보험법) 개정의견」, 『상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 장덕조(2020), 『보험법』, 법문사
- 정찬형(2007), 「2007년 확정된 정부의 상법(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 『금융법연구』, 제4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 조규성(2021),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에 관한 고찰 - 누수사고에 대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을 중심으로-], 『법과 기업 연구』, 제11권 제3호, 법
학연구소

최기원(2002), 『보험법』, 박영사

한기정(2018), 『보험법』, 박영사

古瀬村邦夫(1957), “損害防止義務及び損害防止費用について - 約款との関連における考察-”,
私法, 1957卷18号, 日本私法学会

江頭憲治郎(2022), “商取引法”, 弘文堂

中出 哲(2012), “損害防止費用とは何か - 損害防止費用における損害の意味-”, 保険学雑誌,
第618号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결정서(<https://www.fss.or.kr/fss/bbs/B0000390/list.do?menuNo=201182>)

로앤비(<https://www.lawnb.com/>)

엘박스(<https://lbox.kr/>)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특별회원	₩150,000원	
개인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저자약력

백영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변호사 / 선임연구위원
E-mail : pyh@kiri.or.kr

박정희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선임연구위원
E-mail : pjh@kiri.or.kr

연구보고서 2024-10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 누수 사고 관련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4년 9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93021-50-7 (정가 10,000원)
979-11-85691-50-3(세트)